

등록번호	자치행정과-7421
등록일자	2015.5.13.
결재일자	2015.5.14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치행정팀장	자치행정과장	행정관리국장	
윤경희	교육	권철회	전결 05/14 이제영	
협 조				

2015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계획



행정관리국
자치행정과

2015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계획

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력봉사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고, 구정수행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● 서울특별시 중구 통·반 설치 조례 제10조(편의제공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

※ 중학교는 의무교육(2004년 관련법 개정)이며,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(2012년 8월 23일)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.

II 지급개요

● 지급시기 : 연 2회(상·하반기)

- 타 장학금 중복수혜여부 확인을 위해 탄력적으로 지급시기 조정(조례 제8조)

- 상반기에는 1·2분기 교육비(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), 하반기에는 3·4분기 교육비(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) 납입금 지원

● 대상자 :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 자녀

● 인 원 : 연 80명 내외(반기별 40명)

※ 통장 정원의 15% 범위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조정(조례 제6조)

● 종 류

- 유공장학금 : 지역발전, 반사회 운영, 질서·환경개선, 선행 및 주민 화합 등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
- 특기장학금 :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·체육·예능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에게 지급

● 선정기준

- 지급기준일(2015. 5. 13.) 현재 1년 이상 통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고등학생 자녀 1인
- 유공자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, 위촉일 이후 분기별 납입금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

※ 예시 ▮ 2015. 2. 6.(1분기 중) 신규 위촉자는 2분기 교육비에 대해 신청

↳ 2015. 5. 1.(2분기 중) 신규 위촉자는 3분기 이후 장학금 신청가능

- 정부, 공공기관, 지자체, 민간단체, 교내 장학금을 중복 지급받는 경우(하이서울장학금, 새마을장학금 등) 제외

● 지급기준액 : 반기당 927,980원(463,990원 x 2회)

※ 2015년 서울시 국·공립학교 상한액(기준)

구 분	계	수 업 료	학교운영지원비	비 고
분 기	463,990원	362,700원	101,290원	

● 지급범위

- 교육비 실납입액 중 1인당 지급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
- 입학금 및 교과서 대금은 제외

Ⅲ 선정 및 지급

● 지급절차별 업무처리자



● 장학생 추천(동 주민센터)

- 통장 재임기간, 실제 자녀여부,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 후 추천
- 신청액과 실납입 영수증 등을 개별 확인하여 부정·과다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
- 신청자 구비서류
 - 장학금 신청서, 재학증명서, 특기증명서(해당자만), 학비 납입영수증 각 1부

● 장학생 선발(중구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)

- 중구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구성
 - 위원장(부구청장), 위원(각 국장 5명), 간사(자치행정과장)
 - 서면심사 실시
- 선발순위(조례 제5조)
 -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
 -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

- 선행,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
-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
- 선발예정자는 조정순위와 학교간 평준화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
- 정부, 공공기관, 지자체, 민간단체, 교내 장학금을 중복 지급받는 경우 제외(하이서울장학금, 새마을장학금 등)

● 장학금 지급(자치행정과)

- 절 차

- 자치행정과 :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장(학부모)에게 통보
- 통장(학부모) :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장학금지급청구서 제출(동에서 수합하여 자치행정과로 제출)

※ 신청이 없는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, 이 경우 재선발 하지 않음

- 자치행정과 : 통장(보호자) 계좌로 무통장입금

-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 제작 및 전달식은 공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생략

※ 장학증서에 자치단체장의 직·성명 표기 후 직인날인과 단체장의 증서전달식 참석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

IV 소요예산

● 금 액 : 71,680천원

● 예산과목 : 자치행정과, 주민자치기반강화, 자치행정강화, 자치행정 운영, 일반보상금, 장학금및학자금

V 추진일정

- 장학생 추천 2015. 5. 22.(금)까지
- 타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2015. 6. 1.(월)까지
- 중구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의의결 2015. 6. 5.(금)까지
-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출 2015. 6. 10.(수)까지
- 장학금 지급 2015. 6. 12.(금)까지

※ 하반기 일정은 추후 확정 통보

VI 행정사항

- 자치행정과 : 장학금 지급 총괄
- 각 동주민센터 : 장학금 지급계획 홍보 및 장학생 추천

붙임 : 1. 장학금 신청서 1부.
2. 장학생 추천서 1부.
3. 장학금 지급청구서 1부. 끝.